

2019년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술정보교류 국외출장 실시 계획

1 목적

-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(MOLISA) 및 현지 기업 방문을 통해
 -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확장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협력강화 방안 모색 및 현지 기업의 안전보건 지원 수요 파악
- 태국 방콕 소재 국제노동기구(ILO) 및 현지 국내기업을 방문하여
 - 공단에서 추진중인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 안전보건 수준향상 지원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방향 모색

2 출장개요

- 출 장 지: 베트남, 태국 등 2개국
 (베트남) 노동보훈사회부(MOLISA), 현지 사업장
 (태국) ILO 아시아·태평양사무소(방콕 소재), 현지 국내사업장
- 출 장 자: 10명

연번	소속기관	직급	성명	비고
1	네트워크협력실	1급	박상복	대표자
2	교육홍보본부	3급	이기완	
3	정보화센터	4급	김덕환	
4	중앙사고조사단	5급	박종희	
5	교육원	5급	박선아	
6	서울지역본부	4급	김정애	
7	강원동부지사	3급	현병조	
8	울산지역본부	3급	하종수	
9	전북서부지사	3급	최기석	
10	경기북부지사	6급	전미애	

○ 출장기간: 2019. 6. 16.(일) ~ 22.(토) (6박 7일)

일자	내용	비고
6. 16.(일)	• 출국	인천공항 → 하노이공항
6. 17.(월)	•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방문	
6. 18.(화)	• 베트남 사업장 방문	현지 기업
6. 19.(수)	• 태국(방콕) 이동	하노이공항 → 방콕공항
6. 20(목)	• ILO 아태사무소 방문	ILO 아태사무소 안전보건 전문가 안내
6. 21.(금)	• 태국 사업장 방문	한국 기업
6. 22.(토)	• 입국	방콕공항 → 인천공항

※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여지 있음

3

세부 수행사항

- 공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베트남 정부와의 기술협력 협정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 성과 모니터링 및 분석
 - 안전보건 중점지원 대상국인 베트남에 대한 안전보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
 - 현지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 파악 및 향후 개선사항 도출
 - 안전보건과 인적 역량강화의 중요성 논의
- 국제노동기구(ILO) 아시아·태평양 사무소와 공단이 공동 추진중인 개발도상국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 지원 사업 현황 파악
 - ILO 아태사무소의 개발도상국 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토의
 - 아태사무소 안전보건 전문가(Specialist), 현지 파견 공단직원(최중호 차장)
 - 현지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파악 및 기술지원 방안 모색
 -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파악 및 향후 개선사항 도출

- 동 출장은 2019년 국제협력사업 「국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」 사업중 “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 및 정보교류” 사업으로 추진
- 신ERP시스템의 국외출장 신청·복명, 국외출장 계획 및 보고서의 등록은 국제협력센터에서 일괄 실시
 - 국외출장 인솔 대표자(박상복 부장)는 출장결과 보고서를 귀국 후 3주 이내 국제협력센터로 제출
 - 국외출장 인솔 대표자는 사업장 및 기관방문 시, 상대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을 소개
 -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
 - 출장기간 중 관련기관, 사업장 관계자 등과의 면담내용 보고 (보고서에 포함)
 - 출장직원에 대한 항공 마일리지 신고서 첨부(보고서에 포함)
 - 귀국 후 출장수행결과 및 소감을 국제협력센터에 설명
- 출국·귀국을 위한 국내 이동 여비는 각 소속기관(부서) 국내여비로 지급 (국외 출장 명령기간 내 이동 시, 교통비(일비, 식비 제외) 실비 청구)
- 출장기간 중 공단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. 사고발생 즉시 출장자 대표는 가능한 현지에서 조치하고 발생 및 조치현황을 즉시 국제협력센터에 통보
- 국외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을 받은 경우, 「공직자 선물 신고제도」에 따라 처리 ※ 선물신고안내문: (덧붙임 3)
- 각 출장자 마일리지 현황 (덧붙임 4 참조)
 - 공단 신ERP 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 관리대장 조회결과,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 위한 누적 마일리지 없음

덧붙임 1

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기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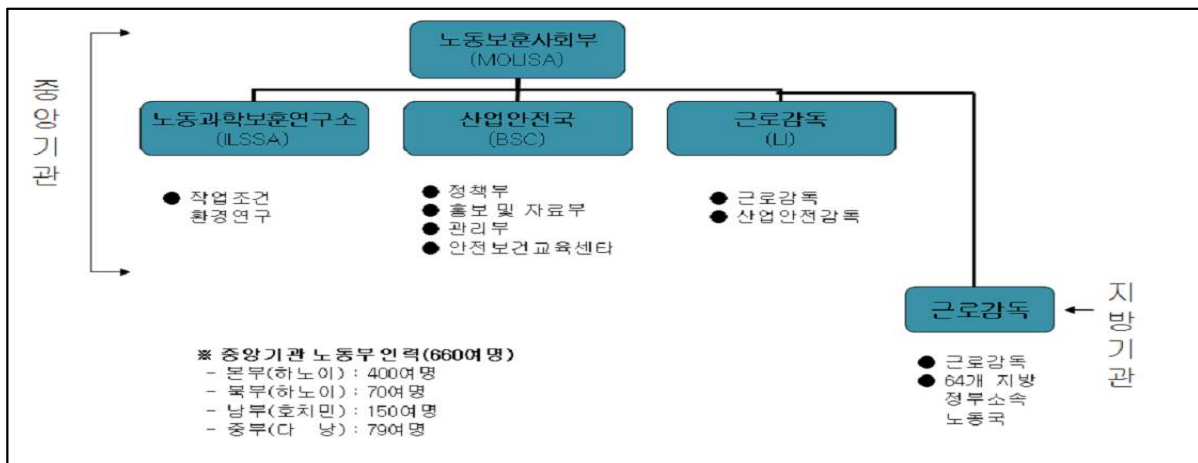
(Ministry of Labour – Invalids and Social Affairs, MOLISA)

□ 기관개요

- 베트남 정부기관
- 2003년부터 산업안전, 노동보호 및 산업보건 분야 노동부로 일원화
 - 보건부 산하인력이 노동부로 옮겨오지 않아 보건업무는 보건부에서 계속수행

□ 조직

○ 조직도



※ 지방조직은 별도로 없으며 63개 시군 지방정부에 노동국에서 해당업무 담당

□ 주요기능

- 산업안전보건관련 정책 수립, 지도, 감독, 교육 등 전반

(IL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, ILO-ROAP)

ILO 조직 개요

□ 조직

- 1919년에 설립된 UN 특별기구의 하나로 스위스 제노바에 본부를 두고 대륙별로 5개 지역사무소(아프리카, 아메리카, 아랍, 아시아·태평양, 유럽·중앙아시아)를 운영 중이며, 약 3,000명의 직원이 187개 회원국의 노사정 구성원들을 지원 중.(17.1월 현재)
- 2012.9월부터 영국인 Mr. Gay Ryder가 사무총장으로 부임하여 활동 중이며 (2016.12월 5년연임 확정), 4대 전략사업 추진중.

□ ILO의 MISSION :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권익보호

- 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
-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회원국의 양질 일자리 창출 지원
- 일의 세계(World of Work)에서 선도역할 담당
- 사회정의에 대한 역사적 소임을 충실히 이행

□ 4대 추진전략

- 근로기본권 보장원칙 확립과 확산
- 양질의 근로조건과 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남녀에게 균등히 제공
- 모든 구성원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보장을 증진
- 노사정 협력체계와 대화 장려

□ UN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

- UN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(SDG -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 추진에 부응하여(2016년도)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(Decent Work)를 위한 각종시책 추진중 (SDG and 2030 AGENDA)

ILO 아·태 지역사무소 현황

□ 조직 (2018. 11월 현재)

- 지역사무소장 (Ms. Tomoko Nishimoto, 일본인)과 부소장 (Ms. Panudda Boonpala, 태국인), 2개의 DWT (Decent Work Technical Support Team)으로 구성
 - 태국 방콕, 인도 델리 각 1개소 및 5개의 지원팀, 11개 국가사무소 그리고 8개 연락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회원국 수는 36개국임
- 「한-ILO 협력사업」은 방콕 아태사무소에서 고용노동부 파견관(홍정우 서기관)의 관리 하에 운영 중
 - 「한-ILO 협력사업」은 총 3개 핵심분야(사회보장, 근로자 기술향상, 산업안전보건)를 중심으로 수행 중이며,
 - 이중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미얀마, 라오스 등 2개국을 대상으로 약 3십만 USD 규모의 지원사업을 운영 중(2018. 6월 ~ 2020. 12월)

□ 운영

- ILO는 회원국이 분담하는 정규예산과 추가지원금으로 운영되며, 2016년 한국의 정규 예산 분담금은 약 91억원으로서 전체회원국 중 상위 13번째.
- 「한-ILO 협력사업」 예산※은(3년, 3백만 USD) 정규분담금외의 추가지원(Extra Budgetary Funding)으로서 상위 13번째에 해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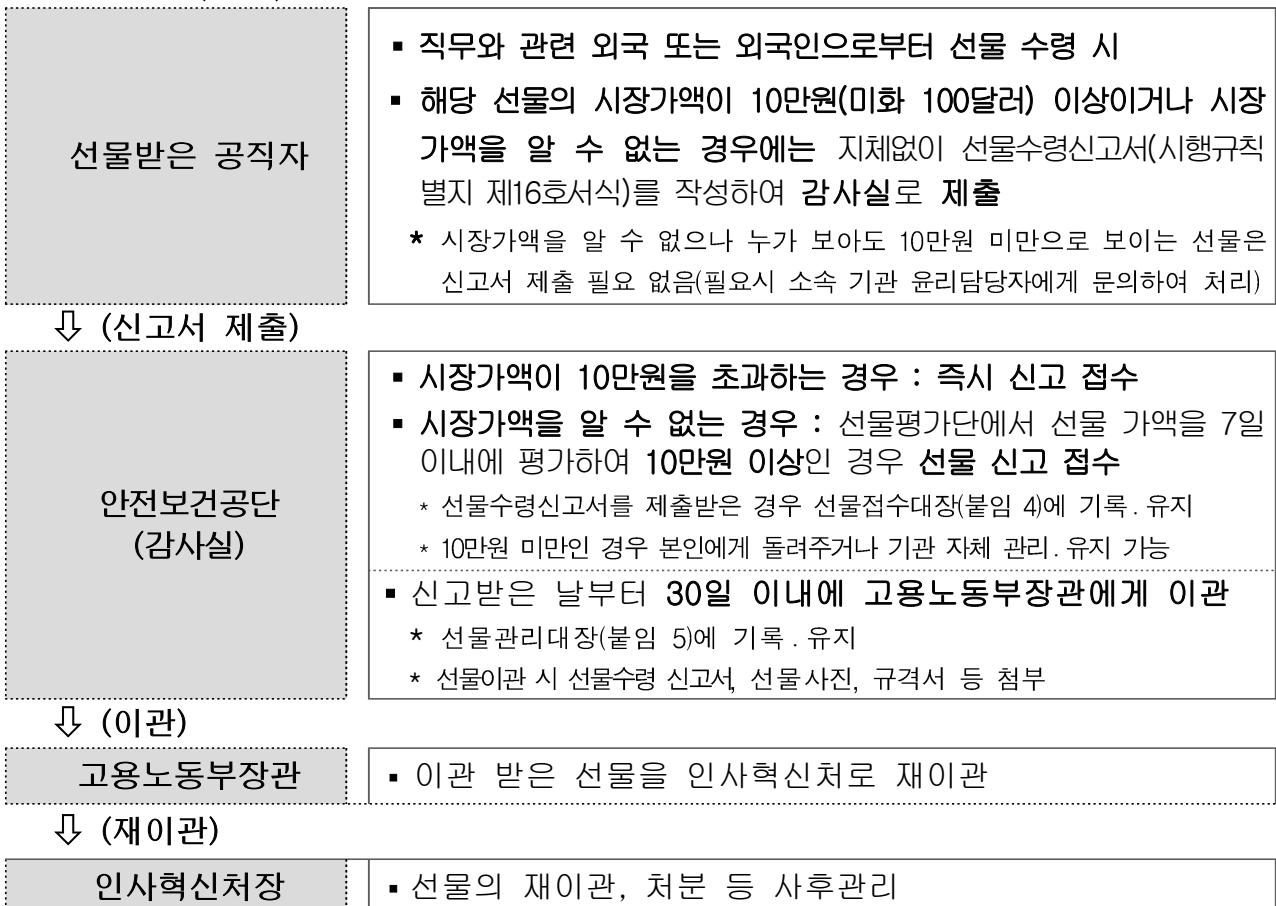
※ 「한-ILO 협력사업」예산편성 : 아·태지역사무소 200만USD, ILO본부 100만USD

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·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제도개요

- 근 거 : 공직자윤리법 제15조~제16조, 동법시행령 제28조~제30조
- 신고의무자 :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(가족포함)
- 대 상 선 물 :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(단체포함)으로부터 받은 선물

□ 신고요령(절차)



□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